

계약에 관한 규정

2020.04.01.제정 2020.07.01.일부개정 2021.10.01.일부개정 2021.11.01.일부개정

〈총무팀〉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에서 시행되는 계약 업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계약의 종류) 계약은 물품, 공사, 용역, 기타로 구분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물품”은 비품(기계기구, 집기비품), 소모품, 실험실습재료 등을 말한다.
2. “공사”는 건축, 전기, 설비, 소방 등을 말한다.
3. “용역”은 개발, 유지보수 등을 말한다.
4. “기타”는 토지, 건물 등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하며,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1.10.1.)

1. 교비예산: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,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국가계약법”이라 한다)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.
2. 국고예산: “국가계약법”을 우선 적용하며, 별도의 규정(지침)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(지침)을 우선 적용 한다.

제4조(담당 부서) 본 대학교의 계약 업무는 총무팀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물품계약 업무를 요청하는 부서는 제반 서류 및 자료를 총무팀에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와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. (개정 2020.7.1., 2021.11.1.)

1. 부서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
2. 학생지원비, 연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. 다만, 고정자산으로 관리를 요하는 것은 제외 한다.
3. 예금 및 의무성 성질의 유가증권(주식 및 채권, 상품권 등)으로 총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4.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품목인 경우. 다만, 비품은 제외한다.
5. 전적금액 200만원 미만의 소모성 예산(실험실습비, 소모품, 홍보물 등) 및 비품 수리
6. 삭제 <2020.7.1.>
7. 전적금액 500만원 미만의 시설 보수 및 공사(시설관리팀의 협조 및 입회), 용역 및 보험, 음식점 및 숙박업소 선정, 관광버스 대여, 행사 대행 용역
8. 총학생회와 공동주관하는 연중행사(신입생오리엔테이션, 대동제, 국토대장정, 동아리 축제, 학생자치기구 간부수련회, 해외봉사활동 등)

9. 언론광고(홍보, 채용광고 등) 및 보도

10.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,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
제5조(계약 요청) 계약 요청 시 해당부서는 본 대학교 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여 총무팀으로 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 기본적인 계약 시 필수 자료 외 도면, 작업내역서, 과업지시서 등을 추가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업체 선정만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예정가격조서의 작성 및 결정기준) ① 입찰을 통해 계약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 계약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예정가격 결정기준은 “국가계약법”을 준용하여 결정한다. 다만, 계약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 총장이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1.10.1.)

제7조(입찰 및 수의계약의 결정) ① 입찰 및 수의계약의 결정은 [별표 1]에 따른다.

② 입찰은 나라장터(G2B)에 공고 하여야 하며, 상황에 따라 본 대학교 홈페이지,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정할 수 있다.

제8조(단가 계약) 물품을 계속하여 제조·수리·가공·매매·공급·사용 등이 연속·반복되는 계약업무의 경우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9조(공고 기간) 공고 기간은 [별표 2]에 따른다. 다만, 긴급 공고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(공사의 현장설명) 공사의 현장설명을 실시할 경우 현장설명 불참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.

[본조신설 2021.10.1.]

제10조(계약서 작성)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와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② 계약서 작성은 계약금액 기준 2천만원(부가세 별도) 초과일 경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2천만원 이하이라도 장기계약이나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 할 때 작성이 필요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. (개정 2020.7.1.)

제11조(입찰보증금, 계약보증금, 지체상금률, 하자보수보증금, 하자담보책임기간)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찰보증금, 계약보증금, 지체상금률, 하자

보수보증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[별표 3]에 따른다. (개정 2021.10.1.)

②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,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, 「전기공사업법 시행령」 등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
제12조(제보증금의 본 대학교 귀속) 제 보증금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.

제13조(선금 지급기준) ① 계약을 이행시키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선금은 계약의 노임, 자재구입비,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며, 세부 사항은 「기획재정부 계약예규」 제12장 제33조(선금의 지급 등) 내지 제34조(적용범위)에 따른다.

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만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14조(제안서평가위원회) 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심의/평가를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 구성 및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1.10.1.)

1. 위원회 구성은 8인 이상 15인 이하로 해당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부 교/직원으로 구성하며,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.
2. 위원회에서 제안서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사전 배부 할 수 있다.
3. 사전 배부된 제안서는 내/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(검수) 물품의 검수는 본 대학교 검수규정에 의한다.

제16조(대금의 지급) 납품 완료 시 수량, 규격 등에 이상이 없다는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당사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계약당사자와의 상호협의 하에 월단위로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익월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「물품계약에 관한 규정」 이 규정 제정에 따라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 규정 「물품계약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입찰 및 수의계약 결정 기준표

구분	유형	주요 내용				방법
		종합공사	전문공사	그 밖의 공사	용역/물품/기타	
입찰	추정 가격 기준	2억 초과	1억 초과	8천만원 초과	5천만원 초과	나라장터(G2B)
소액수의 (2인 이상 견적 제출)		2억 이하	1억 이하	8천만원 이하	5천만원 이하	나라장터(G2B)
1인 견적 제출 가능		- 2천만원 이하 다만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취약계층 30% 이상 고용 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이하				나라장터(G2B)에 의하지 않고 수의 계약

※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필요에 따라 나라장터(G2B)를 통한 견적 의뢰도 가능하다.

[별표 2] 공고 기간 기준표 (개정 2020.7.1.)

구분	구매규격 사전공개	공고 기간 산정 방법			비고	
		공고 기간		토요일/공휴일		
일반 공고	5일	7일		포함		
긴급 공고	3일	5일		포함		
소액 수의	-	3일		제외		
견적 요청	-	3일		제외		
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경쟁등의 입찰	5일	추정 가격 기준			포함	
		10억 미만	10억 이상 50억 미만	50억 이상		
		10일	15일	40일		
공사	-	추정 가격 기준			포함	
		10억 미만	10억 이상 50억 미만	50억 이상		
		7일	15일	40일		

- ※ 공고 기간 예시(일반 공고 기준): 공고일(1일) + 공고기간(7일) + 개찰일(1일) = 총 9일 소요
- ※ 공사의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.
- ※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.

[별표 3] 입찰보증금, 계약보증금, 지체상금률, 하자보수보증금 기준표 (개정 2020.7.1., 2021.10.1.)

구분	계약 금액 기준			비고
	물품	공사	용역	
입찰보증금	10%	10%	10%	
계약보증금	10%	10%	10%	
지체상금률	1천분의 1.5	1천분의 1.0	1천분의 2.5	
하자보수보증금	10%	10%	10%	

※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.

※ 위 표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정별 관련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.